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 (예정)
시설(건축)	지방시설서기	4명	충남교육청 및 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및 직속기관 등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발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하자검사, 안전점검- 실태조사 및 예산 계획 수립-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경력, 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평정요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3항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5.11.(금) 09:00 ~	서류전형	-	-	2018.05.28.(월) (예정)
2018.05.15.(화) 18:00 (12:00~13:00 제외)	면접시험	2018.05.28.(월) (예정)	2018.05.30.(수) (예정)	2018.05.31.(목) (예정)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나. 자격요건(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시설(건축) 지방시설서기	아래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설서기(건축) 직무관련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술 사</td> <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능 장</td> <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사</td> <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방수, 소방설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능 사</td> <td>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td> </tr> </tabl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방수,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방수,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 이상 : 기사, 기술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다. 우대요건(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임용분야	우대 조건(가점 부여)
시설(건축) 지방시설서기	<p>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p>
	<p>2. 직무관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지방시설서기 직무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p>
	<p>3.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분야 : 채용예정 직급(지방시설서기)의 담당예정업무 ※ 관련분야 직무경력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입상 후 2년, 산업기사 3년, 기능사 4년 경력은 제외함</p>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우대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성별 제한 :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아래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2018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다. 접수기간 : **2018. 5. 11.(금) ~ 5. 15.(화) [3일간]**
-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금요일은 17:30까지 접수)
-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6. 제 출 서 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응시수수료[지정된 농협에 지로(현금) 납부] : 금5,000원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p>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p>※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p>

구 분	내 용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협회에서 발행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원본 지참)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원본 지참)
6.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 가. 복무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 나.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

8. 기타(유의)사항

-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시설(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응시수수료 (지로 납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8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명	
------	--	----------	--	----	--

응시자격

자격증

*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경력

* 반드시 작성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우대사항

*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직렬	성 명	생년월일(연령)	서 명 (자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분야	응시직렬	성 명	생년월일(연령)	서 명 (자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 경력 등 자료검증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본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본인의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이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 발휘

2018. . . .

동의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